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3. 18.(수)
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- 제3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이금성

금산군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20호
- 제 출 자 : 금산군수
- 제 출 일 : 2026. 3. 5.
- 회 부 일 : 2026. 3. 17.

2. 제안이유

- 저출생·고령화로 인한 지속적 인구 감소 및 유출을 극복하고자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각종 지원시책 수립·시행 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 활력을 높여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

3. 주요내용

- 총칙
 -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대한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 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-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 ~ 6조)
 -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(안 제7조)
-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
 - 금산군 생활군민 등록 및 발급 (안 제8조 ~ 9조)
 - 금산군 생활군민에 대한 혜택 (안 제10조 ~ 11조)
 - 생활군민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(안 제12조)

○ 보칙

-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 (안 제13조 ~ 14조)
-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여에 대한 포상 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(정의)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6조(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15조(생활인구의 확대 지원)
- 「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)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○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○ 규제심사,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6. 1. 30. ~ 2. 20. / 21일간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저출생·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,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“생활인구” 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,

- 금산군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

감소지역으로, 동법 제15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판단되며,

- 기존의 「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」 제13조가 생활인구 확대 시책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, 규범 체계상 생활군민 등록제 운영 등 구체적인 집행 체계를 별도 조례로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.

○ 비용추계 및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,

- 5년간 4억3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, 홈페이지 구축비 3억원 및 유지보수 8천만원, 인센티브 5천만원으로 추계 되었음.
- 1차년도 재원 3억1천만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나, 3차에서 5차년도까지의 재원 9천만원은 군비 부담이므로, 기금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또한, 생활군민 인센티브를 1,000명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나, 등록 규모 확대 시 소요 예산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한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,

- 본 조례안 제11조에서는 “생활군민”에게 관내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금산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현재 금산군의 공공시설은 「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, 「금산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조례」 등 별도의 개별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,
- 본 조례안에서 “감면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더라도, 각 개별 시설 조례의 감면 대상에 “생활군민”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, 실제 현장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충돌할 우려가 있음.

-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, 생활군민 제도의 조기 정착과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, 본 조례의 “부칙”에 “다른 조례의 개정” 규정을 두어 관련 개별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